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1단계) 시설공사(2공구) 안전점검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기관 지정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공고명 : [재공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1단계) 시설공사(2공구)
안전점검기관 지정공고

2. 안전점검 개요

- 가. 점검건명 :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1단계) 시설공사(2공구)
정기안전점검 · 초기점검
- 나. 점검대상 :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붙임) 참조
- 다. 점검비용 : 금 166,3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3. 공사개요

- 가. 공 사 명 :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1단계) 시설공사(2공구)
- 나. 공사개요 : 도수관로 신설 12.8km, 통합가압장 1개소
- 다. 공사현장 :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 라. 공사금액 : ₩149,327,247,262(부가세포함)
- 마. 공사기간 : 2026. 07. 30. ~ 2030. 01. 04.(1620일간)
- 바. 발 주 자 : 한국수자원공사 첨단용수사업단
- 사. 시 공 사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4. 참가자격

한국수자원공사의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명부(수리 또는 종합)에 등록된 업체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입찰참가 및 가격입찰 : 2026. 09. 01.(화) ~ 2026. 09. 07.(월)

- 가. 제출서류 : 안전점검기관 지정요청서 1부(별지1)
-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shb2207@kwater.or.kr)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3(8층), 한국수자원공사 첨단용수사업단 서한비
※ 제출 후 반드시 ☎031-369-7145(서한비 과장)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08.(화) 14:00, K-water 건설통합정보시스템 활용

8. 서류제출 및 장소

가. 제출기한 : 2026. 09. 09.(수) ~ 2026. 09. 15.(화)

나.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3(8층), 한국수자원공사 첨단용수사업단
공사1부 서한비 과장

다. 제출방법 : 이메일(shb2207@kwater.or.kr) 및 우편 또는 택배접수

※ 이메일 제출 후, 원본을 반드시 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1부
-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평가항목별 증빙서류 포함)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참고

9. 안전점검기관 지정방법

가.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지정기준」 및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 87.745%)을 제시한 업체순으로 사업수행능력과
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지정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순위에 따라 수행능력평가를 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서류제출 요청 시
7일 이내에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7.5%이상 102.5%이하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
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산술평균한 금액이 1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후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등록
명부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다. 안전점검기관 지정결과는 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http://www.kwater.or.kr>) - 새소식(게시판) - 공지사항

라. 관련 문의는 한국수자원공사 첨단용수사업단 공사1부(담당자 서한비 과장,
☎ 031-639-71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한국수자원공사 첨단용수사업단장

[붙임] 세부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

구분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시설물 구분	공사내용	점검 차수
계	총 1개소			
영 98조제1항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1종시설물 (광역상수도)	상수도관로	정기4회 초기1회
	지하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0층이상 16층미만인 건축물			
	10층이상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천공기(높이 10m이상)	추진·도달 기지 등	가시설	정기64회
	항타 및 항받기			
	타워크레인			
영 제101조의2제1항	높이가 31미터 이상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밸브실 등	가설구조물	정기5회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가시설	가설구조물	정기15회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높이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총횟수				정기88회 초기1회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따라 점검차수는 최소2회 이상 실시

** 정기안전점검 1회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1의 1차와 2차 점검을 모두 포함

*** 안전점검(정기 및 초기) 횟수는 발주처와 협의 하에 변경 될 수 있음

[별지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1. 사 업 명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호		대표자		소재지
직무분야			전화번호		
보유면허 현황					

3.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안전점검 [] 초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안전점검 비용 (안전점검 소요비용)	* 금액은 제출 후 수정 불가, 금액 기입 후 인감 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합니다.

이
한
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 첨단용수사업단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요청서 신고인	→	접수	→	검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수리	→	통보